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,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(안 제2조)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 신설(안 제3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8조, 제11조, 제12조의3, 같은 법 부칙 제5조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
맞춤형 급여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,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,
- 아울러,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지난 2015년 7월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